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278
----------	---------

제안년월일 : 2020년 4월 23일

제안자 : 교통위원장

1. 수정이유

- 동 제정조례안은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대부분 시장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 현재 유사한 기능의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사례를 고려할 때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시장 뿐만 아니라 자치구청장도 함께 조성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마련하여 조례안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함

2. 주요 골자

- 가. 교통안전 체험시설 정의의 약칭규정을 변경(안 제2조)
- 나. 교통안전 체험시설에 대한 책무의 주체를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에서 '서울특별시 또는 자치구 구청장(이하 "시장" 등)'으로 수정(안 제3조)
- 다. 교통안전 체험시설에 대한 정보공개 주체를 '시장'에서 '시장 등'으로 수정(안 제4조제1항)
- 라. '시장 등'은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시 「교통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기능 및 설치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안 제5
조제2항)

마. 교통안전 체험시설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의 주최를 '시장'에서 '시
장 등'으로 수정(안 제6조)

3. 참 고 사 항 : 생 략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자치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를 “서울특별시장 또는 자치구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3조의 제목을 “(시장의 책무)”에서 “(시장 등의 책무)”로 하고, 같은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 중 “시장은”을 각각 “시장 등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시장은”을 “시장 등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시장 및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을 “시장 등은”으로 하고, 같은조 제3항 중 “시장은”을 “시장 등은”으로 한다.

제6조제1항과 같은조 제2항 중 “시장은”을 각각 “시장 등은”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의원발의안)	수 정 안(전문위원실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통안전 체험 시설”이란 「교통안전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u>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자치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u>이 설치한 교통안전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 ----- <u>서울특별시 또는 자치구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u>이----- ----- -----</p>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u>시장은</u> 교통안전 체험시설이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는 데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실행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② <u>시장은</u> 교통안전 체험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그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p> <p>③ <u>시장은</u> 시민의 편의성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교통안전 체험시설이 권역별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u>시장 등은</u> ----- ----- ----- -----</p> <p>② <u>시장 등은</u> ----- -----</p> <p>③ <u>시장 등은</u> ----- ----- -----</p>
<p>제4조(정보공개) ① <u>시장은</u>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현황을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p>	<p>제4조(정보공개) ① <u>시장 등은</u> ----- ----- -----</p> <p>② <u>(제정안과 같음)</u></p>
<p>제5조(교통안전 체험시설의 기능 및 설치 기준)</p> <p>① 교통안전 체험시설은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어린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교통안전 교육 및 교통사고 예방 교육 등을 수행한다.</p> <p>② <u>시장 및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u>은 어린이 등의 교통안전 체험시</p>	<p>제5조(교통안전 체험시설의 기능 및 설치 기준)</p> <p>① <u>(제정안과 같음)</u></p> <p>② <u>시장 등은</u> ----- -----</p>

제 정 안(의원발의안)	수 정 안(전문위원실안)
<p>설을 설치할 때에는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설치 기준을 따라야 한다.</p> <p>③ <u>시장</u>은 교육대상자의 유형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6조(위탁운영 등) ① <u>시장</u>은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교통 또는 교육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② <u>시장</u>은 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 ----- -----</p> <p>③ <u>시장 등은</u> ----- ----- ----- -----</p> <p>제6조(위탁운영 등) ① <u>시장 등은</u> ----- ----- ----- ----- -----</p> <p>② <u>시장 등은</u> ----- ----- ----- -----</p> <p>③ (<u>제정안과 같음</u>)</p>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통안전 체험시설”이란 「교통안전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시장 또는 자치구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이 설치한 교통안전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시장 등은 교통안전 체험시설이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는데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실행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 등은 교통안전 체험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그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시장 등은 시민의 편의성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교통안전 체험시설

이 권역별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공개) ① 시장 등은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현황을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교통안전 체험시설의 기능 및 설치 기준) ① 교통안전 체험시설은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어린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교통안전 교육 및 교통사고 예방 교육 등을 수행한다.

② 시장 등은 어린이 등의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설치 기준을 따라야 한다.

③ 시장 등은 교육대상자의 유형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운영 등) ① 시장 등은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교통 또는 교육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구청장이 어린이 등의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시장 등은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 등은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교통공단 등 교통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 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내 교육기관, 노인복지시설, 민간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